



제424회 국회(임시회)
제2차 기획재정위원회

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인구인지 예·결산제도 도입〉

■ 박용갑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6120호)

2025. 4.

기 획 재 정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최병권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참고사항	2
IV . 검토의견	3
1. 인구인지 예·결산제도 도입 (안 제15조의2)	3

I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박용갑의원 등 11인

나. 발 의 일 : 2024. 12. 2.

다. 회 부 일 : 2024. 12. 3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부는 2006년 저출산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한 후 2022년까지 총 322.7조 원의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으나, 합계출산율은 2006년 1.13명에서 2024년 3분기 기준 0.76명으로 하락해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있음.

그런데 최근 저출산 예산이 템플스테이 운영, 종교문화행사지원, 공무원 스마트워크센터 구축, 그린스마트스쿨 조성, 관광 활성화 사업 등 저출산과 관련성이 없는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음.

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인구증감 및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 사업도 성인지 예·결산제도처럼 예산과 기금의 중·장기적인 정책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인구인지 예·결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함.

이에 인구인지 예·결산제도 도입을 위해서 정부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인구인지 결산서 및 인구인지 기금결산서, 인구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3 신설 등).

Ⅲ.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용갑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6122호), 「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6124호), 「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6121호)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612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IV. 검토의견

1. 인구인지 예·결산제도 도입

(안 제15조의2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○ 인구인지 예·결산제도 도입 - 인구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가 포함된 인구인지 결산서 제출(예산서 작성·제출 및 결산서 작성은 「국가재정법」에 신설) - 인구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가 포함된 인구인지 기금결산서 제출(기금운용계획서 작성·제출 및 기금결산서 작성은 「국가재정법」에 신설)

개정안은 인구인지 예·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「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206122호)¹⁾ 등의 의결을 전제로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인구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 등이 포함된 인구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.

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「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은 정부가 예산이 인구 증감 및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 등에 미치는 효과

1) 「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」(박용갑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제2206122호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○ 인구인지 예·결산제도 도입 - 예산의 원칙에 인구 증감 및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 관련 사항 규정 - 인구인지 예산서 작성·제출 -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·제출 - 인구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가 포함된 인구인지 결산서 작성(제출은 「국가회계법」에 신설) - 인구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가 포함된 인구인지 기금결산서 작성(제출은 「국가회계법」에 신설) - 중앙인구영향평가위원회 및 인구인지예산 전담부서 설치, 인구영향평가기관 지정 등

를 분석·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예산의 원칙에 명시하고, 예산 및 기금이 인구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·평가한 별도의 예산서·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·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, 중앙인구영향평가위원회 및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인지예산 전담부서를 설치하며, 인구인지 예산서 작성 및 인구영향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한 인구영향평가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의 ‘인구인지 예·결산제도’를 도입하려는 것으로,

총인구와 생산연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 하에서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적정 인구수준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,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인구증감에 대한 국가의 대응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 타당성이 인정되나,

인구인지 예·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예산 및 기금이 인구증감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, 주요 선진국에서도 인구인지 예·결산의 도입 사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인구인지 예·결산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개정안은 「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」, 「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」, 「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의 심사 결과에 따라 개정 여부를 결정하여

야 할 것임.

※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5조의2(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)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 (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) 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야 한다. 1. ~ 7의2. (생략) <u><신설></u> 8. ~ 12. (생략) ②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. 1. ~ 2의2. (생략) <u><신설></u> 3. (생략) ③·④ (생략) ⑤ 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 결산 서,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<u>온실 가스감축인지 결산서</u> ,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 및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<u>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</u> 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제15조의2(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) ① ----- ----- ----- ----. 1. ~ 7의2. (현행과 같음) <u>7의3. 인구인지 결산서 및 인구영향 평가 종합분석보고서</u> 8. ~ 12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~ 2의2. (현행과 같음) <u>2의3. 인구인지 기금결산서 및 인구 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</u> 3. (현행과 같음) ③·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<u>온실가 스감축인지 결산서</u> , 같은 항 제7호의3 에 따른 <u>인구인지 결산서</u> ----- ----- <u>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 및 같은 항 제2호의3에 따른 인구인지 기금결산서</u> ----- ----- -----.

문 의 처

02)6788-5153

